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56 | 2024.10.14 (2024.10.07~10.1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07~10.13)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공사비가 '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었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도 고양시와 화성시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거나 대학·연구기관 등이 집적하여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로써, 현재 전국 28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약 4,800여개의 벤처기업이 벤처촉진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대형 R&D 투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R&D 예타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R&D 추진 규모 및 유형에 따른 보완 절차를 마련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절차·방법을 적용하는 심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재정 투자 효율화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등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평가회사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정보회사 정관의 변경을 사후보고로 변경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신용정보업 주요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8인)」** ,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계약 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을 정의하여 사용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4년도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10/14 12개 상임위, 10/15 9개 상임위, 10/16 5개 상임위, 10/17 11개 상임위, 10/18 11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건설공사비 안정을 위한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착수(국토교통부) 7
- 경기 고양·화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규 지정(중소벤처기업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0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0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10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부) 1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12
-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2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4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5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19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0인) 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21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21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22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3인) 2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3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23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24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8인) 2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25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4인) 26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7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07~10.13)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아파트 외벽석재의 꽃임촉 미시공에 관하여 거액의 철거후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번복받은 사례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5 (2024년 10월 2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비 안정을 위한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착수 -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5개 부처 합동점검반 운영, 신고센터 설치 -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한 건설비 상승 요인, 정부 합동점검으로 차단	2024-10-1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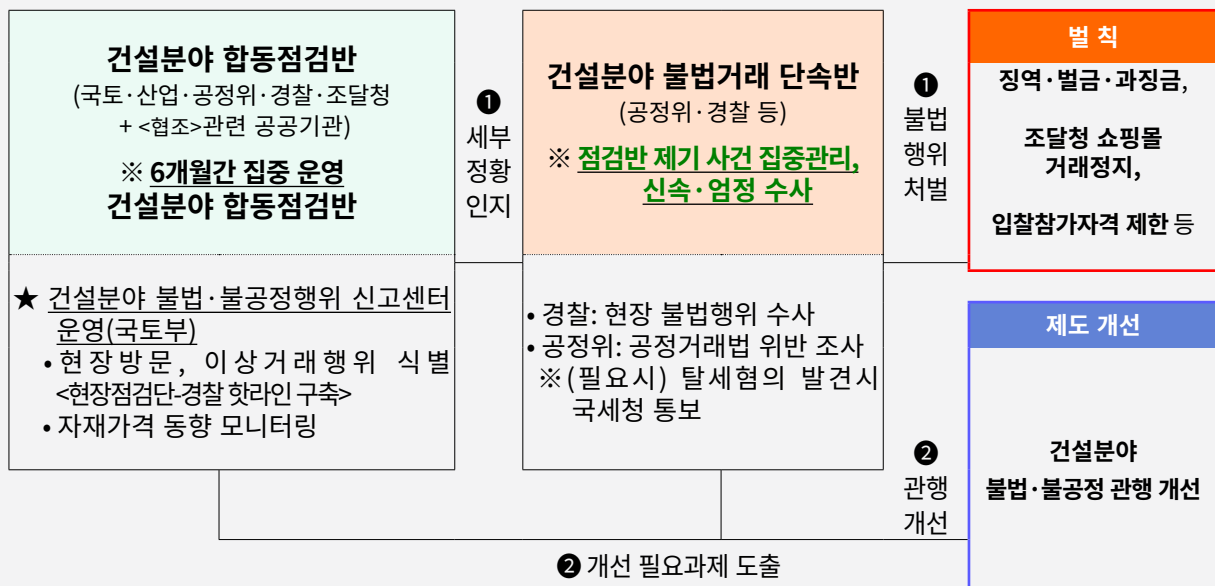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힘.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최근 공사비가 '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었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임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됨. 우선,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하고,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하여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함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①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②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③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임

<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개선체계 >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 고양·화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규 지정

- (고양) 경기북부 최초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벤처·창업 활성화
- (화성) 반도체 등 특화산업 발전과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집적지로 육성

2024-10-11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도 고양시와 화성시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거나 대학·연구기관 등이 집적하여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로써, 현재 전국 28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약 4,800여개(‘24.9월 기준)의 벤처기업이 벤처촉진지구에 위치하고 있음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짐.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고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로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SBS를 비롯한 방송·미디어 시설과 국립암센터 등 6개의 종합병원 및 한국항공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을 기반으로 벤처기업 성장거점과 첨단기술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할 예정으로 대화동 등 8개 행정동에 걸쳐 면적 1.25㎢로 구성되어 있음

① 대화동, 장항동, 법곶동 지역은 고양경제자유구역(예정),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고, 향후 대기업, 첨단제조, 지식기반, 콘텐츠 산업 등이 입주될 수 있도록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교통망 GTX-A개통을 앞두고 있음

② 식사동, 백석동 지역은 21세기 의약학, 생명과학, 헬스케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바이오 등을 선도하는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및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있으며 고양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시설(인프라) 및 공동연구시설 협력으로 벤처·창업 거점으로서의 변화가 예상됨

③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지역은 무인기(드론)·이동수단(모빌리티)·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한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 무인기(드론)선도(앵커)센터, 무인기(드론)비행장,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 등 위치하여 창업거점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근 창릉3기 신도시로 우수한 청년인재 확보 및 직주근접이 가능함

벤처촉진지구 지정 이후 고양특례시는 244억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 100억원 규모의 ‘고양창업펀드’를 활용하여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 집중투자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가의 성장발판 역할을 하고, 지역거점을 통한 28청춘사업소, 내일꿈제작소, 원스톱창업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상담(컨설팅),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임

<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화성시는 기초 지자체 중 지역 내 총생산(GRDP) 전국 1위, 경기도 내 제조업체 수 1위, 경기도 내 벤처기업 수 2위 등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집적 및 육성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춘 지역임. 동탄신도시 내 기업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및 확장, 산·학·관 협력, 우수인력 유치, 기업 협력시스템(네트워크)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성장시켜 나아갈 계획이며, 동탄테크노밸리와 동탄일반산업단지, 석우동IT단지 지구로 구성돼 있음

① 동탄테크노밸리지구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집적지구(클러스터)로 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공인지원센터, 보육(인큐베이팅)센터, 지식산업센터(38개소) 등 최적의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어 높은 수준의 첨단제조·인공지능(IT) 분야 기업이 다수 입주함에 따라 경기남부 벤처·창업의 새로운 중심지(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됨

② 동탄일반산업단지 지구는 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반도체,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첨단기업이 다수 입지한 벤처기업 집적단지로 향후 편리한 교통(경부·용인서울고속도로)과 직주근접(동탄신도시, 오산세교지구), 지구 주변 ASML 등 글로벌 반도체기업 입주에 따라 벤처기업의 추가적인 집적과 성장이 예상됨

③ 석우동 정보통신(IT) 단지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기흥캠퍼스 중심에 위치하여, 지구 내 세계적(글로벌) 반도체기업(ASML, 도쿄일렉트론) 및 첨단연구소,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수 위치한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업체 집적지구로 현재도 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 중에 있음

벤처촉진지구 지정 이후 화성시는 700억 원 규모의 ‘창업벤처투자펀드’를 2,0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벤처촉진지구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창업보육센터 확대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유망 벤처기업의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0-08 시행

국제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홍보·컨설팅 및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5백만원, 2회 위반 시 7백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01 시행 예정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여 그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외에 벤처기업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09 시행 예정
---------	-------------------	------------------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품목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품목조합의 기준을 종전에는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8천억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0-08 시행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임시이사의 해임 및 이사 선임을 위한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때 종전에는 해당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0-10 시행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공포, 10. 10.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제조를 위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의 허가증 및 재활용 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등록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해당 면제 확인을 최초 1회만 받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8. ~11.18.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9년에 도입되었으며, '18년부터 R&D 분야 예타 조사는 유연성과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제도를 운영 중임

다만,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도 불구하고 R&D예타 사업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실기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대형 R&D 투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R&D 예타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R&D 추진 규모 및 유형에 따른 보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고 (안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4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4에 따른 '구축형연구개발사업' 중 R&D 과제와 건축사업이 기능상 일체로서 별도 추진이 곤란한 경우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38조 제1항 제1호)
- ② R&D 예타조사를 과기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조항을 삭제함 (현행 제38조의3 삭제)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4에 따른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사전심사를 실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함 (안 제39조 제4항)

※ 문의처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tel:044-215-5415) (전화: 044-215-5415, 팩스: 044-215-8120)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08. ~11.18.
-------	------------------	------------------------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면서, 그 외 추진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임. 그러나 현재 시행령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금융환경의 악화, PF 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민간투자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한편,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예산상 제약으로 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공사 지연, 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이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를 선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을 7개 추가 (안 제18조의3 신설)**
 -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부대사업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②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담의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안 제29조제2항제1호)**
 -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여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 ③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 조달비용, 관련 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안 제37조의2 신설)**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전화: 044-215-5453, 팩스: 044-215-8121\)](tel:044-215-54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8.
~11.18.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착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음(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24.5.17). 그러나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영속적 투입이 불가피함. 따라서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절차·방법을 적용하는 심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재정 투자 효율화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술성평가 제도의 폐지 (현행 제12조의3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적시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평가 제도를 폐지함
- ②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및 사업추진심사 실시 (안 제12조의4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국가재정투자 효율화 및 사업기획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투자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 대상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규정함

③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안 제12조의5 신설)

-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 구체화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계획변경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tel:044-202-6942) (전화: 044-202-6942, 팩스: 044-202-6048)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07.
~11.18.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검토 업무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 사유 판단에 필요한 범죄경력자료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규정 삭제 (현행 제13조2 및 제13조3 삭제)

-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이 사업자와 사용자간 분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부령으로 규정

② 권한 및 업무의 위탁 (안 제30조)

- (업무위탁) 집단에너지 사업장 확인 점검 업무 신규 위탁하고, 현재 에공단에서 수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검토, △공급규정 관리, △공사계획 검토 업무 등의 위탁근거를 조문에 반영

③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안 제31의2)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 사유 판단에 필요한 범죄경력자료 처리 근거 마련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의 확인이 필요하나, 현행 조항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만 규정

④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근거 마련 (안 제5조)

- 재건축사업을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에 포함 하여 지역냉난방 공급 활성화 추진
-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tel:044-203-3928) (전화: 044-203-3928, 팩스: 044-203-4756)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203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송의 범위, 수송관의 범위 및 저장소 기준 (안 제2조 내지 제4조)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 따른 수송, 이산화탄소수송관 및 저장소의 용어 정의의 구체화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스트림 외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범위, 수송의 수단, 배관 및 관계 시설의 범위, 저장소의 기준을 규정함

②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및 제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탄소중립위원회에 상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③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안 제8조)

- 포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치·운영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포집시설의 위치 및 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함

④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신청 (안 제10조)

- 수송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송수단별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⑤ 수송관설치운영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검사 실시 (안 제11조 내지 제14조)

-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최초 점검과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함
-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별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안전관리자의 여행·질병, 해임·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행자 및 직무대행기간을 규정함

⑥ 탐사승인의 절차 및 취소절차 등 (안 제16조 내지 제19조)

-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탐사승인신청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탐사승인 기준으로 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능력, 탐사방법 등을 고려해야 함
- 탐사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자는 탐사기간 종료일(연장받은 자는 연장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승인의 취소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탐사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자는 탐사승인서를 반납해야 함

⑦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 취소 (안 제20조 및 제22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저장후보지 선정 시 안정적 주입·저장이 가능한 지질학적 물성 및 구조의 해당 여부, 누출 등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 저장후보지 선정 취소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사유 등을 관보 등에 공표해야 함

⑧ 저장소의 폐쇄절차 (안 제24조)

- 저장소의 폐쇄명령 시 저장사업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폐쇄 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봉인(封印), 시추공의 완결(完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장소의 폐쇄 방법에 적합하게 폐쇄를 실시해야 함

⑨ 폐쇄된 저장소의 원상복구 (안 제25조)

- 원상복구의 기준을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구 폐쇄 및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의 수거로 규정함
- 폐쇄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완료 시 원상복구 완료 확인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⑩ 저장사업의 허가 및 저장소의 사용신고 (안 제26조 및 제28조)

-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저장사업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저장소의 사용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mailto:energy@sk.com) (전화: 044-203-5157, 팩스: 044-203-475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08.
~11.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기업 지분을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와 벤처펀드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한 (안 제37조제2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mailto:venture@sk.com) (전화: 044-204-7711, 팩스: 044-204-7719)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0.10.
~11.19.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 절차 정비 (안 제51조 및 제52조)**

-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기한,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 지급방법 등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함

②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안 제59조)**

- 긴급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③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규정 정비 (안 제116조제3항제2호)**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취업의 기준을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에서 ‘월 150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tel:044-202-7357)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07.
~11.18.

기술신용평가회사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정보회사 정관의 변경을 사후보고로 변경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신용정보업 주요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술신용평가회사 허가대상 확대 (안 제5조)**

- 기술평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사업자(예: 발명·기술평가기관)를 기술신용평가업 허가신청 가능대상에 추가함

② **신용정보회사 정관의 변경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 (안 제8조)**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사전신고 사항을 사후보고 사항으로 변경함

③ **채권추심회사에 채무확인서 교부를 위탁하는 자의 범위 규정 (안 제11조의2)**

-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채무확인서 교부업무의 위탁자로 규정함

④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대상을 확대 (안 제28조의3)**

- 정책수요자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추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전송요구권 행사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⑤ 임원 겸직승인 심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 (안 별표3)

-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상임임원 겸직신청은 금융위원회가 접수하되 겸직승인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⑥ 기타 조문 단순정비 (안 제9조의2, 제17조의2, 별표1의2)

- 기타 조문의 단순 오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tel:02-2100-2623) (전화: 02-2100-2623, 팩스: 02-2100-254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2024-10-07 발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판매대금 지급 등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소비자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소비자, 가맹사업자, 대리점들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이들에 대하여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같이 기존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을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72조제1항)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2024-10-07 발의
최근 금융당국·수사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방식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2020년 82.6억원 수준이던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가 불과 2년만인 2022년에 199.6억원으로 2.4배 증가하는 등 그 피해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파목 및 같은 조제2호 마목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2024-10-10 발의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계약상의 부당한 특약이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이에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조 및 제3조의4제3항 신설)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10-11 발의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에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2024-10-11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제9항 및 제30조의2제5항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4-10-10 발의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년간 2억원)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되고 이주비용 또한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토지소유자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현행 감면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2024-10-10 발의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배의 정의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경고그림·문구 표기 등 금연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지정, 담배 인체 위해성 조사 등 각종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도 속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2024-10-07 발의

현재 누리호와 같은 우주발사체에는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 강제종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 화약류가 필요한데, 특성상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우주발사체 전용품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으나, 민수화약류로 분류되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의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생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우주발사체 화약류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 분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8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3인)

2024-10-07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의2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10-10 발의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함.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아야 함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4·5·6월과 9·10·11월의 ‘평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 주중 18만 8천원, 주말 24만 7천원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음. 대중형 골프장 다수가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고 수요가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료를 싸게 책정해 평균치를 맞추는 꼼수를 쓰고 있음. 세제 혜택은 받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대중형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대중형 골프장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감면분만큼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임 (안 제21조제5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2024-10-07 발의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유전 후보지(일명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 납부의무와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조광료 부과요율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2조의3제1항 및 제18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2024-10-10 발의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 지역은 관련 산업의 특성상 금속 절삭 등 기계 가공의 공정이 많은 만큼 이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등의 사용이 불가피함. 현재 경남도 내에만 11,530여개의 금속가공제품제조 관련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시 발생한 폐수를 대부분 전량 위탁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최초 입주가 제한되거나 당초 입주한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원료·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특정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시설폐쇄 등의 행정규제를 받으므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곧 조성될 창원 지역의 방위산업, 원자력 분야의 신규 국가산단 입주 공장들은 기계산업의 특성상 절삭유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가산단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임

이에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전과 원활한 기업활동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8인)

2024-10-11 발의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작물 재배 등을 하면서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 및 농가 수입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대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원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보전, 농업인의 소득향상,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이바지함 (안 제1조)
- ②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함 (안 제3조)
- ③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기간은 23년 이내로 함 (안 제4조)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안 제5조)
- 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 (안 제9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안 제10조)
- ⑦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안 제11조)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14조)
- ⑨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6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2024-10-07 발의

최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사업의 원·하수급자 구분없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계약 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여 안전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하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2024-10-07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대가에 관한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비롯한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포함한 근로자파견의 구체적인 대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임금액 및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함 (안 제20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2024-10-07 발의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평균 16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기간제·파견·하청·용역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나타났고,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이 규제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제6조제1항), 동일가치노동을 정의하여 사용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자 함 (안 제6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

2024-10-08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폭넓은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이에 **현행 규정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24조)**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024-10-08 발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2024-10-08 발의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멈추고 회복 추세로 전환 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와 사회 전 구성원의 실천과 협력이 제시되고 있음

그리하여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모든 집단의 공평한 접근과 참여 보장’,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등의 목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지자체 전략 수립·이행 확대’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음.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전략 이행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수립 및 이행이 미비하며 국가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 및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관리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이를 지원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2장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2024-10-11 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2023년에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친가·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조사를 위한 휴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기업 자체 내규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친가와 외가에 차별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6, 제37조제2항제8호의2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 14.(월) 12개 위원회	법사위	법제처	국회 1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14:00
	정무위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	부산국제금융센터 14:00
	기재위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서울) 10:00
	교육위	[현장시찰] 수원 한누리유치원, 안산 석수초등학교	수원, 안산 10:00
	과방위	[업무현황보고] (주)문화방송	상암 MBC 10:00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국회 오후
	외통위	<미주반> 주멕시코대사관	주멕시코대사관 10:00
		<구주반> 주스페인대사관, 주포르투갈대사관,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주스페인대사관 10:00
		<아주반>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10:00
	국방위	[현장시찰] 공군작전사령부	오산 09:30
		[현장시찰] 육군특수전사령부	이천 13:30
	행안위	경기도	경기도청(수원) 10:00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농해수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등 9개 기관	국회 10:00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산자중기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6개 기관	나주 10:30
	환노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20개 기관	전북지방환경청 10:00
		[현장시찰]	새만금 오후
	국토위	<지방1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10:00
		<지방2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청 10:00
10. 15.(화) 9개 위원회	법사위	감사원	국회 10:00
	정무위	[현장시찰]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부산국제금융센터 10:00
	교육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10개 기관	국회 10:00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YTN, TBS 관련증인	
	국방위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행안위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10:00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체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1개 기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현장시찰] 목포신항해상풍력배후항만, 솔라시도	목포·해남 10:00
	환노위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등 12개 기관	국회 10:00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 16.(수) 5개 위원회	기재위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 4개기관	국회 10:00
	외통위	<미주반> 과테말라대사관,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주과테말라대사관 10:00
		<구주반> 주알제리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10:00
		<아주반> 주중국대사관	주중국대사관 10:00
	농해수위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등 7개 기관	산림청(대전) 10:00
		[현장시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10:00
	국토위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기관	
10. 17.(목) 11개 위원회	법사위	<지방1반> 대전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기관	대전고등법원 10:00
		대전고검, 대전지검 등 7개 기관	대전고등검찰청 14:30
		<지방2반> 대구고법, 대구지법 등 10개 기관	대구고등법원 10:00
		대구고검, 대구지검 등 6개 기관	대구고등검찰청 14:30
	정무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00
	교육위	<감사1반>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4개 기관	광주교육청 10:00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6개 기관	광주교육청 14:00
		<감사2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대학교 10:00
		[현장시찰] 의학교육	오찬후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6개 기관	경북대학교 15:00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과방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3개 기관	대전 10:00
	국방위	육군본부, 육군사관학교 등 11개 기관	계룡대 10:00
	행안위	<지방1반>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10:00
		[현장시찰] 공평2지하차도 등	도청감사 종료후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현장시찰 종료후
		<지방2반> 경상북도	경상북도 10:00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문체위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	울산 10:00
	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15개 기관	국회 10:00
	환노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기관	국회 10:00
	국토위	[현장시찰]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화성 10:00
10. 18.(금) 11개 위원회	법사위	서울고검, 수원고검 등 11개 기관	국회 10:00
	기재위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정부대전청사 10:00
	교육위	<감사1반>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4개 기관	충북대학교 10:00
		[현장시찰] 의학교육	오찬후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4개 기관	충북대학교 15:00
		<감사2반>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3개 기관	부산대학교 10:00
		부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등 5개 기관	부산대학교 14:00
	과방위	[현장시찰] 지하실험연구단, 천연물연구소	정선, 강릉
	외통위	<구주반> 주이집트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10:00
		<아주반> 주일본대사관	주일본대사관 10:00
	국방위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등 7개 기관	계룡대 10:0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등 5개 기관	계룡대 15:00
	문체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21개 기관	국회 10:00
		[업무보고] 연합뉴스(비공개)	연합뉴스 사옥 17:00
	농해수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 3개 기관	국회 10:00
	산자증기위	[현장시찰] 월성원자력본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경주 10:00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회 10:00
	환노위	[현장시찰]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경북 안동 14:00
10. 19.(토) 1개 위원회	외통위	<미주반>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0:00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16(수) 10:00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국회 토론회]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정혜경·윤건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0/19(토) 14:00	기본소득 가을학교. 1강 :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 종차로 보는 기본소득의 의미	용혜인 의원실 등	서울 및 온라인 (ZOOM)
자료집 등	10/14(월)	「이달의 입법민원」 (2024.9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10/1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7호(2024-19호) 발간	국회도서관	
	10/16(수)	「금주의 서평」 제699호 발간 - 도서명 : ‘나’라는 착각 - 저자 : 그레고리 번스		
	10/16(수)	「World&Law」 2024-18호 발간		
	10/18(금)	「현안, 외국에선?」 제92호 발간 - 일본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본격 추진		
	10/14(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1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11(금)	「2024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발간	국회사무처	
	10/8(화)	「금주의 서평」 제698호 발간 - 도서명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저자 :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국회도서관	
	10/10(목)	「현안, 외국에선?」 제91호 발간 - 미국 청소년 약물중독의 예방과 대책		
	10/7(월)	「NABO Focus」 제76호 발간	국회예산정책	
	10/11(금)	「2025년 NABO 경제전망 : 2024~2028」 보고서 발간		
	10/7(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0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07~10.13)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11(금)	건설/부동산	아파트 외벽석재의 꽃임축 미시공에 관하여 거액의 철거후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번복받은 사례
10/11(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5 (2024년 10월 2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